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2. 3. 22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566
----------	---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4. 강남구청장(주민자치과)
- 나. 상정의결
  -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3. 22.)  
“원안가결”

### 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양미영)

- 가. 제안이유
  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통·반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
    - 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변경
- 다. 참고사항
  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  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 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  - 기 타
   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2.1.28. ~ 2022.2.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임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「지방자치법」을 전부개정(2021. 1. 12. 공포, 2022. 1. 13. 시행)하면서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통 등 하부 조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이를 조례에서는 통·반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.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전·후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.

개정 전	개정 후
<p><b>제16조(주민의 감사청구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<u>19세 이상</u>의 주민은 시·도는 500명,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, 그 밖의 <u>시·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</u>로, 시·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</li> <li>2.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</li> <li>3.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</li> </ol>	<p><b>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<u>18세 이상</u>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18세 이상의 주민"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<u>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</u>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</li> </ol>

<p>인 사항. 다만,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4.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</p>	<p>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</p>
---	---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에 맞게 인용조문을 제4조의2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정비한 것임.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- 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- 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3. 4.  
제출자 : 강남구청장  
제출부서 : 주민자치과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통·반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

1) 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변경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[법률 제18661호]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(2) 입법예고 (2022. 1. 28.~2022. 2. 17.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임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 제3항  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,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비용발생사항이 없음

### 4. 작성자

-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서기 차주혜(02-3423-5197)